



중소벤처기업부



수신 불공정거래신고센터

(경유)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담당자

제목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안내 협조요청

1. 귀 단체 및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소기업부(이하 '중기부')에서는 기업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70개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상생협력법') 제22조의 2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·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, 이와 관련된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지원을 요청드리며,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희망할 경우, 조정협의 신청 절차 및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 등 제도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요청드립니다.
4. 아울러, 위탁기업이 조정을 거부하거나, 계약서의 조정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기재하는 등 위법·부당한 피해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, 중기부에 통보하여 주시고, 피해기업에 아래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 - 위탁기업이 조정협의 신청을 받고 협의 개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수탁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제8항 및 제28조에 따라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접수: (분쟁조정) 중소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☎ 044-204-7948

(법률지원)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☎ 02-368-8470, 8463

5.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요건 및 절차, 분쟁조정 신청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www.mss.go.kr - 공지사항 -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'21. 6.15.).
끝.

중소벤처기업부



조사관 김남기 공업사무관 강병택 거래환경개선 전결 2022. 4. 22.
과장 노형석

협조자

시행 거래환경개선과-590 (2022. 4. 25.) 접수

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(어진동) / www.mss.go.kr

전화번호 044-204-7948 팩스번호 044-204-7949 / kng819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정책정보는 "기업마당"(www.bizinfo.go.kr), 전화상담은 ☎1357